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(주)삼성화재우리베스트법인 보험대리점

2. 제재조치일 : 2026. 7. 30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보험설계사	과태료(40만원) 부과 :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
(자필서명 미이행)

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,

○ (주)삼성화재위아에셋 보험대리점*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. 7. 22. ㉔ 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서에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을 대신하게 한 사실이 있음

* (주)삼성화재위아에셋 보험대리점은 '24.6.12. 해산 후 (주)삼성화재우리베스트법인에 흡수합병 되었고, 보험설계사 甲은 '21.7.22. 위반행위 당시 (주)삼성화재위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임

< 관련법규 >

1. 「보험업법」 제97조 제1항 제7호